

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

주요내용 정리

- 퇴직금 IRP계정 이전 의무화
-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(30인 이하 사업장)
- 300인 이상 사업장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
-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이유

- 법 개정이유: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B형) 운용이 수익률이 낮고, 제도의 취지인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,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‘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’ 도입 및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‘적립금 운용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운용하게 함.
- 시행령 개정이유: 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시행일

- 법 시행일: **2022년 4월 14일** (2021년 4월 13일 개정)
- 시행령: 2022년 4월 14일 (2022년 4월 13일 개정)
- 2022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」 심의, 의결
- 2022년 1월 13년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퇴직금 IRP계정 이전 의무화

- 기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만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였으나,
- 법 개정으로 **22년 4월 14일 부터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(IRP)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** 되었습니다. (일반계좌로 X)
-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.
(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수금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)
- 퇴직금 중간정산에 한하여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예외사유

-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
-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
-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
-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

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

- 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최소적립금 미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-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·통보해야 하며, **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/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**됩니다.

과태료 기준: 1차 위반 200만원, 2차 위반 500만원, 3차이상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

- 최소적립의무 준수여부 -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**재정검증결과에 기초하여** 최소적립의무 준수여부를 판단합니다.(22년 4월 14일 이후 재정검증결과 통보 부터)
- 노동부는 **2022년 적립 부족 해소여부는 2023년에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 유도할 계획**이라고 안내했습니다.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(30인 이하 사업장)

- **중소기업(30인 이하)**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’(이하 ‘중소퇴직기금제도’)가 도입됩니다.
-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‘사용자 부담금’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%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(지원 요건·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)
- **중소퇴직기금제도 설정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.** 퇴직금, 퇴직연금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.

300인 이상 기업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

-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.

▪ 적립금운용위원회

-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
(DB가입자수가 300명 미만 이어도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설치의무)
-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, 위원 수는 5명 ~ 7명으로 구성
(최소적립금이 미달한 사업장은 ① 근로자대표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)
-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
- 목표수익률의 설정·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, 적립금 운용계획서,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·의결
-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, 2차 위반 시 20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

-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합니다.

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 규정 (개정 '22.4.13. 시행 '22.4.14.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사용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나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1호	200만원	500만원	1천만원
다. 사용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2호	200만원	500만원	1천만원
라.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1호의2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마.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1호의3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바.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3호	200만원	500만원	1천만원
사. 사용자가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아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3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자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4호	200만원	500만원	1천만원
차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4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카.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5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